

제175회(정례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6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면
 ○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81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(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
- 1) 기금운용관 : 보건소장 → 보건위생과장
- 2) 기금출납원 : 보건위생과장 → 식품위생담당주사

나.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에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추가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(2007.4.27 ~ 2007.5.17)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보건위생과장
2. 기금출납원 : 식품위생담당주사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영업자”를 “영업자 및 집단급식소(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) 운영자”로 한다

제1조 중 “식품위생법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”으로 하고, 제3조 중 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”을 “「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제5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하고, 제12조 중 “식품위생법시행규칙”을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① ~ ② (생 략) <u>1. 기금운용관 : 보건소장</u> <u>2. 기금출납원 : 보건위생과장</u> ③ ~ ④ (생 략)	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1. 기금운용관 : 보건위생과장</u> <u>2. 기금출납원 : 식품위생담당주사</u>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5조의2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</u> <u>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</u> <u>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출납폐쇄 후</u> <u>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</u> <u>작성해야 한다.</u> <u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</u> <u>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</u> <u>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</u> <u>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</u> <u>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</u>
제8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 울특별시종로구 관할지역안의 <u>영업자</u> 로 한다. 다만, 단란주점·유흥주점 영 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 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	제8조(용자대상) ----- ----- <u>영업자</u> <u>및 집단급식소(위탁에 따라 운영되</u> <u>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) 운영자</u>--- ----- -----.